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3. 17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고명욱 의원 등 8명
- 발의일자: 2025. 2. 26.(수)
- 회부일자: 2025. 2. 26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(2025. 3. 17.)

2. 개정이유

-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지양하여 직원(공무원)의 사생활을 보장하고,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조례에 재기재된 경조사 휴가일수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달서구의회 직원(공무원)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7조)
- 상위법령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 일수 정비(안 별표 1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
- 「근로기준법」 제50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이용재)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의회 직원(공무원)에 대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을 지양함으로써 사생활을 보장하고, 상위법령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

수를 재기재한 내용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- 근무시간 외 사생활 보장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법률 등에 이를 규정¹⁾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는 근무시간 외 전화·문화·카톡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” (2024년 7월 29일)이 발의되는 등 노동자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도입이 필요함.
- 또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대통령령 제35259호) 제7조의7제1항은 특별 휴가에 관한 내용을 같은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어,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퇴근·휴일 중 부당한 업무 지시를 지양함으로써 사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,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,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1) 프랑스는 2017년 ‘연결받지 않을 권리’를 노동법전에 규정하고, 미국 캘리포니아는 2024년 4월 퇴근·휴일 중인 직원에게 연락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, 호주는 2024년 8월 26일 (15인 이상) 사업장에 이 권리를 규정한 공정노동법을 시행하고 있음.